

## **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**(제24조 관련)

### 1. 건강관리

- 가. 아동의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.
- 나. 보호아동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.
- 다.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라. 보호아동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필수·임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### 2. 급식위생 관리

- 가. 아동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한다. 다만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또는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한다.
- 나. 식기, 도마, 칼, 행주,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·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·관리해야 하며, 어류·육류·채소류를 취급하는 칼·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.
- 다.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라.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·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·냉장시설에 보관·관리해야 한다.
- 마.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.
- 바. 조리실, 식품등의 원료·제품보관실 등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.
- 사. 전염성 질환, 고름형성 상처 등을 가진 사람은 아동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.
- 아. 아동복지시설의 먹는물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하며, 먹는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

경우에는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수질 검사를 신청해야 하고,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 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.

### 3. 관리규정

조직, 인사, 급여, 회계, 물품 및 그 밖의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·시행하여야 한다.

### 4. 장부 등의 비치

아동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.

가. 아동복지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

나.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

다. 아동복지시설 운영일지

라.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(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)

마. 예산서 및 결산서

바. 총계정원장 및 수입·지출 보조부

사.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

아.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

자.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의결서류

차. 입소·퇴소아동의 명단 및 관계 서류

### 5.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기거자

가.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, 보육사, 그 밖에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보호아동과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.

나. 아동복지시설 안에서는 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한다.

### 6. 아동의 보호조치

가.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이 입소하였을 때에는 입소한 날부터 2주 동안 그 심신 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.

나.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이 육체적·정신적으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특별지도를 위하여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.